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규정(안 제4조)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5조)
-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기준가격 및 토지 기준면적 조항 신설(안 제12조)
- 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 확대(안 제32조)
- 마. 매각대금 납부 시 이자 없이 분할납부 가능한 대상 확대(안 제38조)
- 바.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안 제62조)
- 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4.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의 제목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8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 할”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9조 제목,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목,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제33조 제목,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전단,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제16조 제목 중 “사용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제12조 제목, 제13조 제목 및 제14조 제목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제30조제4항 및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
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u>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u> ⑥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u>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u>심의회 에서 심의할 사항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 한 사항</u> 2. <u>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u> 3. <u>법 제12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로 재 산을 이관하는 경우</u> 4. <u>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 5. <u>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u>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u>심의회 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u> 1. <u>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 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 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 2. <u>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u> 3. <u>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 로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u> 4. <u>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u>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
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
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
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
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
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
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
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② (생 략)

제20조(사용 · 수익허가) ① 행정

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

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③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민간단체
<신 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
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
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
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구
미시에서 생산된 농·임·축
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
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
라 조례로 정하는 국제기구 또
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
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
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 제

3. ~ 7. (생 략)

⑤ (생 략)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작성한다.

⑤ (생 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

④ -----

--.

1. ----- 농업인-----

--

3. ~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인등을 -----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할
-----.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할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⑤ (생 략)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
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
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② (생 략) <u><신 설></u>	<u>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 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 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징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며, 징수 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u>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건 호
	담 당	김 은 화
	담 당 자	서 윤 지 (480-5073)